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도입〉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53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1353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도입(안 제27조 및 제52조)	3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53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08.
3. 회 부 일 : 2025. 7.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Ⅲ. 검토의견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도입(안 제27조 및 제52조)

개정안은 사용폐지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원활하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를
이륜자동차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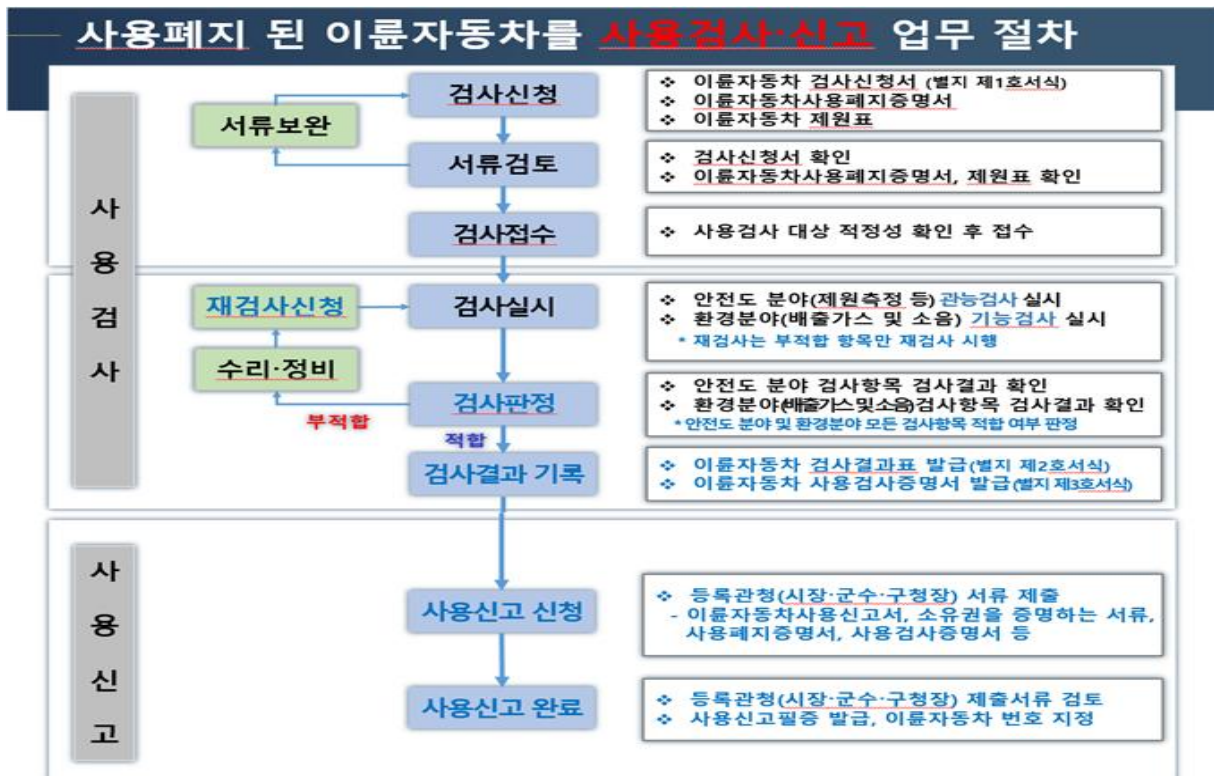
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제26조, 제27조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그러나 사용폐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납⁴⁾해야 하므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⁵⁾까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

<사용폐지 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사용신고 업무 절차>



자료 : 국토교통부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국 59개소로 지역별로는, 서울(6개소), 부산(3개소), 광주(2개소), 대전(2개소), 경기(11개소), 강원(5개소), 충남(2개소), 전북(5개소), 경북(6개소) 등임(참고 참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⁶⁾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⁷⁾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폐지증명서와 제원표를 휴대한 일시 운행은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번호판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음.

한편, 일시운행 대신 검사소까지 운반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검사 비용과는 별도로 1톤 화물차 이용 시 편도 약 6~10만원의 추가 부담(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상이)이 발생할 수 있음.

반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⁸⁾.

6) 「자동차관리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7)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일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과태료 처분 상황을 방지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 법제적인 측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자동차 범위에 대한 정합성 확보

현행법 제2조⁹⁾는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제1항¹⁰⁾에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

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9)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어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제5조¹¹⁾에서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제5조부터 제47조의12까지 규정의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어, 제27조에 규정된 임시운행허가 대상인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제외됨.

개정안이 제27조만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적용하려 할 경우, 제5조의 이륜자동차 제외 규정과 충돌하여 법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 체계상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준용 규정에 대한 검토

개정안 제52조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제27조¹²⁾ 전체를 준용하도록

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11)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하고 있으나, 제27조는 일반적인 임시운행허가(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 임시운행허가(제1항 단서,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수출목적 임시운행허가(제2항 단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륜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도입 취지가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개정안 제52조에서 제2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부터 제4항까지만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이 제52조에서 제27조를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경우, 제27조를 인용하고 있는 제76조제6호¹³⁾(임시운행허가 관련 수수료), 제77조제7항¹⁴⁾(임시운행허가 사무의 위탁), 제84제3항·제4항¹⁵⁾(임시운행허가

-
-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3)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하 생략)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 14)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5)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함께 준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전에 소유자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사용검사에 필요한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륜자동차에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2) 법제처

현행법 제5조 본문에서 정한 자동차의 범위와 개정안 제27조제1항 본문에서의 자동차의 범위가 서로 모순 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포함 관계에 관한 집행 상 혼선을 예방할 수 있도록 두 규정을 보다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또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대상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나 수출목적인 자동차도 포함하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준용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27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76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 제77조제7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준용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오토바이정비협회

개정안에 동의함.

(4) 이륜자동차산업협회

- 이륜차를 자동차에 준한 관리체계가 우선 검토·시행되어야 함
 - * 사용신고제→등록제로 전환, 중고차 매매업에 이륜차도 포함
-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을것으로 보여 임시번호판 부여까지는 필요없음.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현황(59개소)

시도	시군구	검사소명	주소
서울	강남	강남자동차검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45길 13 (울현동)
	마포	성산자동차검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노원	노원자동차검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길 41 (하계동)
	구로	구로자동차검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성동	성동자동차검사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송정동)
	마포	상암자동차검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부산	사하	사하자동차검사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 (신평동)
	사상	주례자동차검사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동)
	해운대	해운대자동차검사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 (재송동)
대구	이현	이현자동차검사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 (이현동)
	수성	수성자동차검사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달서	달서자동차검사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5길 10 (유천동)
인천	미추홀	인천자동차검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53번길 81 (학익동)
	서구	서인천자동차검사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18 (가좌동)
광주	남구	광주자동차검사소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광산	북광주자동차검사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877 (도천동)
대전	서구	대전자동차검사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4 (변동)
	대덕	신탄진자동차검사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31 (문평동)
울산	남구	울산자동차검사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8 (여천동)
세종	세종	세종자동차검사소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운동장로 11-5 (대평동)
경기	수원	수원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 (매탄동)
	의정부	의정부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7 (호원동)
	성남	성남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48번길 8 (상대원동)
	부천	부천자동차검사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2 (삼정동)
	안양	안양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2 (관양동)
	고양	고양자동차검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1 (성석동)
	남양주	남양주자동차검사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273번길 31-19
	수원	서수원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용인	용인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853 (상하동)
	안산	안산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6길 16 (월피동)
	화성	동탄자동차검사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42-4 (영천동)
강원	춘천	춘천자동차검사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원주	원주자동차검사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5 (행구동)
	강릉	강릉자동차검사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952-10 (홍제동)
	태백	태백자동차검사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576 (화전동)
	동해	동해자동차검사소	강원도 동해시 강원남부로 4772 (단봉동)
충북	청주	청주자동차검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충주	충주자동차검사소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6로 29 (금릉동)
충남	천안	천안자동차검사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15 (백석동)
	홍성	홍성자동차검사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
전북	전주	전주자동차검사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신행로 44 (팔복동3가)
	군산	군산자동차검사소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2 (소룡동)
	남원	남원자동차검사소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265-15 (월락동)
	정읍	정읍자동차검사소	전라북도 정읍시 해평북로길 11 (공평동)
	익산	익산자동차검사소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3길 101-7 (팔봉동)
전남	목포	목포자동차검사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53 (상동)
	순천	순천자동차검사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촌길 10 (조례동)
	여수	여수자동차검사소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184-11 (만흥동)
경북	포항	포항자동차검사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 (괴동동)
	구미	구미자동차검사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722 (원평동)
	안동	안동자동차검사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166-13 (수상동)
	영주	영주자동차검사소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88번길 52 (휴천동)
	문경	문경자동차검사소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로 81 (점촌동)
	경주	경주자동차검사소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4391 (용강동)
경남	창원	창원자동차검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94 (대원동)
	진주	진주자동차검사소	경상남도 진주시 술밭로43번길 15 (상평동)
	거창	거창자동차검사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01 (거창읍)
	김해	김해자동차검사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
제주	제주	제주자동차검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이동)

자료: 국토교통부